

한국부동산원 전문계약직 채용 공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부동산금융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1 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부동산금융
- (채용인원) 1명

※ 직무는 [별첨 NCS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채용형태

-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며, 계약기간 1년*

*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관계가 종료되며(연장 불가), 정규직으로 전환 불가

3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관련*** 업무경력 10년 이상으로서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 기준」의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사유**([별첨 참조](#))에 부적합하지 않은 사람

* 리츠(REITs), 자산운용 등 부동산금융 유사 분야

** 해당 심사기준에 대한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공고일('22.10.6)임**

-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 입사예정일은 협의 가능
- 우리 원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별첨 참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4 우대사항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구 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만점의 3,5,10%	만점의 3,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만점의 5%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만점의 3%	만점의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만점의 3%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만점의 3%	만점의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만점의 3%	만점의 3%

* 해당법령에서 정한 가점에 한하며, 가점에 의한 합격인원은 전형별 채용예정 인원의 30% 초과 불가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가능)

자격 우대사항

자 격	서류전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만점의 2%

※ 공고일('22.10.6) 기준 취득·보유·소지한 경우로, 최종합격자 결정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우대사항 적용

- 전형별로 상기 항목별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
* 항목 내에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0. 6(목) ~ 2022. 10. 21(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 ◆ 입사지원서는 공고일 기준('22.10.6)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하여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빙자료 확인 후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 ◆ 입사지원시스템은 공고일('22.10.6)부터 입력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자동 종료됨. 마감시간에 임박한 경우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최종 제출
- ◆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 취소가 불가능하며, 접수 마감 이후로는 입사지원서 조화가 불가하오니 마감일 전에 본인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별도로 보관(화면 캡처 등) 요망

□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자료 등 채용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하는 기한 내 제출

6 전형방식

① 서류전형 → ② 면접전형 → ③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신용조회 등 실시 예정

1 서류전형

- (심사대상)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심사기준) 1단계 적격심사 ⇒ 2단계 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입사지원서 작성내용 기준 직무수행능력 평가(100점 만점)

구분	내용						
적격 심사	- 채용공고문 상 지원자격 심사 후 미충족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부실 기재자 불합격 처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colspan="2">불합격 처리 기준</th> </tr> <tr> <td colspan="2">자기소개서 3개 항목 중 2개 이상 미기재</td> </tr> </table> <p>* 의미 없는 문자·숫자·문장 등을 나열한 경우, 문항을 그대로 복사, 복수 문항에 동일한 내용 반복, 노래가사, 책 내용 등 작성의 경우 미기재로 간주</p>	불합격 처리 기준		자기소개서 3개 항목 중 2개 이상 미기재			
불합격 처리 기준							
자기소개서 3개 항목 중 2개 이상 미기재							
역량 평가	- 자격사항(10), 경력사항(50), 직무적합도(40) ※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 적용 ※ 자기소개서 일부 부실 작성자 감점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h style="width: 50%;">세부기준</th> <th style="width: 50%;">감점</th> </tr> <tr> <td>항목별 100자 미만 기재</td> <td>항목별 2점</td> </tr> <tr> <td>항목별 미기재</td> <td>항목별 3점</td> </tr> </table>	세부기준	감점	항목별 100자 미만 기재	항목별 2점	항목별 미기재	항목별 3점
	세부기준	감점					
항목별 100자 미만 기재	항목별 2점						
항목별 미기재	항목별 3점						

-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처리) 동점자 발생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구분	상세기준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	• 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3순위	• 자격 가점 대상자
4순위	• 자격사항 고득점자
5순위	• 경력사항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합격 취소)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

2 면접전형

○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서류전형에서 합격 취소가 발생한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의 불합격자를 고득점자 순으로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①서류전형 적격심사 부적격자, ②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이 불가능한 자는 제외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기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예비 면접전형 대상자 증빙서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예정)

○ (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구 분	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정보능력 ⑤조직이해능력
직무수행능력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내에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처리) 동점자 발생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구 분	상 세 기 준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	• 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3순위	• 서류전형 고득점자
4순위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3 최종합격자 결정

○ 증빙서류 검토 결과 “합격” 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지거나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성실복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취소

7 전형일정

연번	내 용	일 자
1	채용공고	10.6(목)~10.21(금)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1.2(수)
3	면접전형	11월 말 ~ 12월 초
4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12월 중순

※ 위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위원선정 등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8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 (제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제출방법) 면접전형 전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

※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제출(진위여부 확인 예정)

- 단,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자격증, 수료증 등)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격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등의 확인 용도로만 활용될 뿐 평가 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사전에 안내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공통

- [경력사항]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사 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은 필수 제출
 - *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는 해당기관에서 경력증명서에 징계 유무를 확인받아 제출하고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내역(일자, 징계종류, 징계사유 등) 기재 필수

※ 해당자

- [고령자]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처리) 1부
- [박사] 박사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1부
- [자격사항]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격증(합격증 포함) 또는 등록증 1부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총괄) 2급 이상 인증서 1부
- [군복무중인 자] 전역예정증명서 1부
- [보호]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 채용시험 가점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 [장애인] 장애인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1부
 -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인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저소득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각 1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임을 증빙하는 증명서(부모의 출신국적 표기) 1부

9 근무조건

구 분	근무시간	근무지역	연 봉
부동산금융	주5일, 1일 8시간	대구광역시	100,000천원 내외*

* 성과급이 포함된 금액(기관경영평가 B등급과 내부부서평가 중간등급 기준으로 계산)이며, 시간외·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은 별도 지급

10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안전한 시험장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는 면접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신분확인 시간 제외)해야 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제재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전형에 응시하여 감염증 확산 등의 물의를 일으킬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형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장애인 편의지원제공 안내

- (대상) 공고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자
- (지원내용)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 제공([별첨 참조](#))
- (신청방법) 입사지원서 작성 시 신청
 - ※ 편의제공 요청내용에 따라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여부는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2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력될 경우 각 전형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사전에 안내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진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 사실 및 유효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면접전형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중 1개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서류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청구방법 : 채용서류반환청구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파일을 전자우편(rebinsa@reb.or.kr)으로 제출○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p>※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
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매뉴얼 '예외사항'을 준용,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 영구 보관</p> |
|-------------------------------------------------------------------------------------------------------------------------------------------------------------------------------------------------------------------------------------------------------------------------------------------------------------------------------------------------------------------------------------------------------------------------------|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인적사항(이름, 생월일)과 신분증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단계별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인적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검증,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 여부를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www.reb.or.kr/recruit)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전형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자 : 채용전형 불합격자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파일을 전자우편(rebinsa@reb.or.kr)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국부동산원 채용관리요강>

제17조(채용부정행위의 금지) 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3. 채용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부정행위를 통해 부정합격한 사람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우리 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부정행위, 전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포함한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 부패신고센터(K-Whistle)

13 문의처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Q&A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6.